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 
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 
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(안 제2조제2항)
  - (현행) 충청북도재무관
  - (개정)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장이었던 충청북도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(안 제2조제2항)
-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(안 제2조제2항)

## 4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시행령 개정에 맞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충청북도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더욱 투명한 계약심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